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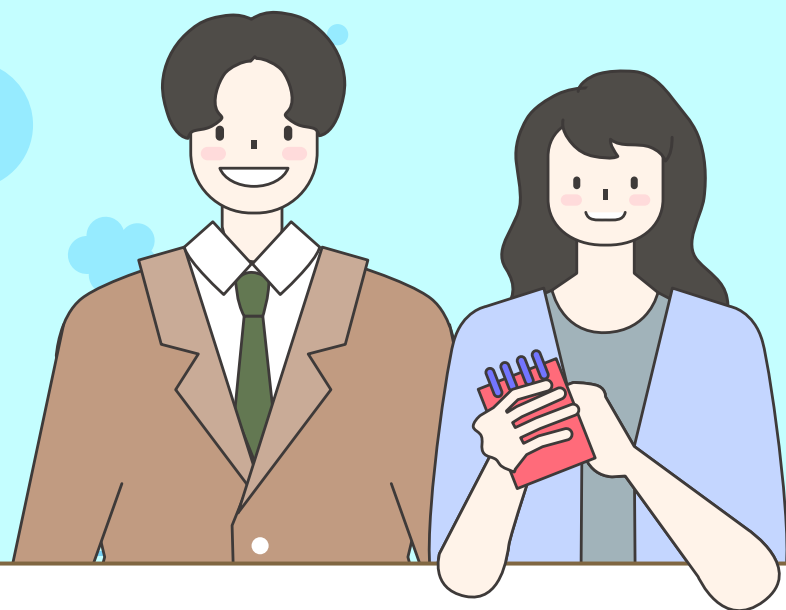
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

신학기 소비자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

계속거래, 전자상거래(인터넷쇼핑) 편



한국소비자원
Korea Consumer Agency



계속거래

1개월 이상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,
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이 제한되거나
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
(헬스장, 인터넷 강의,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)

- ✓ 계약서상 환급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**계약해지 거절**
- ✓ 할인이벤트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**중도해지 거절**
- ✓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요금으로 **과도한 위약금 요구**
- ✓ 사업자 연락두절, 폐업으로 **환급 지연**



- ▶ 이벤트,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**필요한 기간 혹은 단기간 계약으로 이용**
- ▶ 계약체결 시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**계약서 교부 요청**
- ▶ 3개월 이상 계약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**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 거절 요청**

전자상거래(인터넷쇼핑)

✓ 제품 미배송 후 사업자 **연락두절**

✓ 포장상자 개봉, 주문제작 등을 이유로 **청약철회(환급) 거절**



- ▶ 판매자가 **신뢰할 수 있는 업체**인지 확인(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)
- ▶ 주요 계약 내용 보관(상품소재, 사이즈, 색상, 반품배송비 등)
- ▶ 가급적 신용카드 또는 결제대행사 등 **안전거래 방식을 이용**하고, 현금결제(계좌이체) 시 **에스크로 계좌(결제대금 예치),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** 이용



계속거래, 전자상거래(인터넷쇼핑) 기억하세요!



코로나19 등으로 헬스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간 연장 협의!

▶ 휴회, 해지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**휴대전화 문자메시지, 기간연장확인서 등 증빙자료**를 확보

인터넷쇼핑 시 청약철회

▶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**7일 이내**, 상품이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**30일 이내** 청약철회 가능

▶ ‘세일 상품’, ‘액세서리’, ‘흰옷’, ‘적립금 구매상품’, ‘해외구매’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음.



실용적인 소비자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?

한국소비자원 누리집(홈페이지)

www.kca.go.kr

1372소비자상담센터

www.ccn.go.kr

행복드림

www.consumer.go.kr

